

## 비자동 저울의 OIML 적합성 인증서 발행 및 제도 소개

계량측정과 공업연구사 남하욱  
02) 509- 74 10 awook@kats.go.kr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서는 OIML<sup>1)</sup> 국제권고 R 76 「비자동 저울」에 대하여 OIML 적합성 인증서의 발행기관으로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에 등록하고, OIML 적합성 인증서 발행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OIML 적합성 인증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OIML 적합 증명서 제도의 개요>

OIML 적합성 인증서 제도란 계량기의 형식이 OIML의 국제권고와 기술요구사항이 적합하다는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 등록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한 제도로서 이 제도는 1991년 만들어져,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은 계량기의 국제 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OIML의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는 계량기에 대해 제조, 판매,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주된 특징 및 OIML 적합성 인증서를 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OIML 국제 권고의 유효한 활용

이 제도는 OIML 가입국의 계량관련 법규를 정합화하기 위한 것으로, OIML에서는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계량기(상거래,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 등의 관련)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국제 권고를 책정하고 있다.

현재 132개의 국제권고가 발행되어 있지만, 그 중에 OIML 국제권고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계량 요구사항(기술요구사항), 시험순서, 시험보고서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R 76 「비자동 저울」을

1) 국제법정계량기구(Organiz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OIML)은 계량기의 사용상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검사제도 등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권고, 국제문서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포함한 34개의 국제 권고이다. 이 제도에서는 이들 국제권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2) 외국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보 인정

형식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표준계량기관은 다른나라의 가입국에서 발행한 OIML 적합성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보고서)를 인정함으로써, 형식인증 시험의 중복을 피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시험의 기술기준이 OIML 국제권고와 다른 경우는 다른 가입국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보고서)를 심사한 후에 형식인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시험기관은 ISO/IEC 17025 「교정기관 및 시험소의 인정시스템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이어야 한다.

### (3) 시험비용과 시간의 절약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관련 OIML 국제권고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한번의 형식인증 시험으로 완료되어, 형식인증에 요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4) 형식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해서는 계량기의 초기검정을 쉽게 할 수 있다.

(5) 계량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계량기는 OIML 적합성 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발행기관과 제도의 이용자>

가입국은 OIML 적합성 증명서 제도의 운영, 감독, 관리 등에 관련된 절차를 확립하고, 자국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OIML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국제 권고에 근거한 계량기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을 지정(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술품시험연구원이 비자동 저울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됨)한 후, 그 국제권고의 OIML 적합성 인증서의 발행기관(기술 표준원)이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에 등록한다.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수는 31개국 224개사 879개의 OIML 적합성 인증서가 발행되고, 등록되었다.(2001년 12월 말 현재). 현재 한국 기업 3개사가 해외에서 취득한 수는 약 30개 형식이다.

### <OIML 적합성 인증서 신청 순서>

제조업자(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도 가능)은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OIML 적합성 인증서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청서와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 ① 제조업자 또는 해당하는 경우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 ② 다른 OIML 위원에게 동일형식에 대하여 중복으로 동시에 신청하지 않겠다는 선언

- ③ 타 형식과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형식에 관한 설명 및 시험에 관련된 정보
- ④ 제조업자에 의한 조작설명서 등의 계량기 조작에 관한 설명
- 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접수한 형식평가 시험성적서(보고서)

또한 신청자는 상기 이외에 그 계량기가 해당 국제권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체 스스로가 한 시험결과와 제3자 시험기관 등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OIML측에 증명서 등록>

상기의 신청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OIML 적합성 인증서는 신청자에게 발행되고, 그 복사본은 발행기관에서 BILM에게 송부하고, 신청자는 BILM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면, BILM에서는 OIML 웹사이트([http:// www.oiml.org/certificates /cert\\_english.htm](http://www.oiml.org/certificates/cert_english.htm))에 등록한다.

#### <이 제도를 이용한 형식인증심사>

OIML 가입국은 반드시 시험능력을 국제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한 후 발행기관과 시험기관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국은 그것을 발행한 OIML 적합성 인증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대신한다는 것에 위협한 부담을 안은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개국 사이의 전문가가 상호 방문하여 서로의 시험능력을 평가하여 형식인증심사

에 반영시키는 것을 결정한 「형식인증시험결과와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이 각서의 상호체결에 의거 OIML 가입국 10개국과 준가입국 3개국이 체결기관에서 발행한 OIML 적합성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NMJ(계량표준종합센터)와 「R 76 비자동 저울」에 대해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 <「MAA(상호승인협정)」체결에 관해서>

위에 서술한 절차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OIML에서는 국제문서 「형식승인시험의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승인에 관한 체결(MAA)」을 결정하기 위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9차 위원회 초안인 심의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가입국사이에서 시험능력에의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발행기관에서는 ISO/IEC Guide 65에 따라 내부감사를, 시험기관에서는 ISO/IEC 17025에 따른 제3자 인정 또는 Peer Review을 요구하고 있다.

#### <이후의 전망>

산업계 및 국제화 요구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처음으로 R 76 「비자동 저울」의 OIML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후부터는 연료유미터, 가스미터 등에 대한 OIML 적합성 인증서의 발행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세한 신청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전화 02-509-7409~10)로 문의 ♣